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9-29호
2019. 4. 26.(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규 칙(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71호)1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보건관리 규정(훈령 제438호)4

고 시(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9-55호)18

공 고(4)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380호)19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공고 제2019-383호)20
-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공고 제2019-384호)25
- 공공체육시설 수탁기관 모집공고(공고 제2019-391호)28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394호)42

행정예고(1)

- 2019년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19-390호) ...50

공									
람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7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무 전결 기준(제4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소관사무 정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단위사무 신설, 변경과 전결권 조정 등을 통하여 능률적인 사무 처리와 책임행정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직개편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단위사무 신설·변경 및 기안·전결권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4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3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근로자의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

며 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각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해당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산업재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사업부서에서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예방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지며 안전 수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안전·보건기준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구청장은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감독자) 구청장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공공행정 업무는 제외한다)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소관부서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소관 부서의 해당 근무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정기·신규 채용 시·작업 내용 변경 시·특별교육)실시
5. 소관 부서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6. 소관 부서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관리자)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선임·업무위탁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2. 안전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3. 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
4. 안전사고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 강구, 기록 유지·보고와 사고사례의 취합
5. 안전점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7. 산업재해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8.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보건관리자) 구청장은 영 제18조에 따른 유자격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을 보건관리자로 선임·업무위탁할 수 있으며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3. 보건위생 관계 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4. 보건관계 요원의 지도 및 감독
5.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보건에 관한 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확인
6. 그 밖의 근로자 건강유지 등 보건에 관한 사항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사용자 위원: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기후환경과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근로자 위원: 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 또는 지부장) 및 각 대표가 지명

한 자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게시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전 직원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신분 및 활동보장)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의 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4조(참고인의 출석) ① 근로자·사용자 양측은 필요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안전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보고·진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참고인의 직위 및 진술
3. 회의내용 및 심의·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7조(교육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교육)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교육
2. 신규채용자교육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4. 관리감독자 교육
5.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교육시기 및 교육시간·교육내용은 법 제31조에 따른다.

제19조(교육실시 방법)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담당부서의 장 및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지정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제5장 안전관리

제20조(안전보건관리계획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초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부문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실적
2.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
4. 안전교육훈련
5.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수립
6.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련 서류의 기록 및 보존
9.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안전관리자는 해당 근로자의 안전진단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대책을 수립한 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위험성평가) ① 구청장은 건설물·기계·기구 등에 의한 작업행동 및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③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후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표지) ①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그밖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표지의 종류, 형태, 용도, 부착장소, 색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별표 2에 따른다.

제24조(작업중지)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 중지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방호조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영 별표 7에 따른 기계·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안전순찰)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근로상태,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순찰한다.

제27조(사업장의 안전조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안전수칙) ①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제정·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장 보건관리

제30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매년(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71호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한다.

제31조(유해부서 보건수칙) 유해부서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구청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

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5조(재해발생시 긴급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근로자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④ 안전관리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안전사고-

관리감독자, 직업병-보건관리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고조사는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 중 보고용은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같음한다.

⑦ 안전사고 또는 재해의 해당 부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보상을 실시한다.

⑧ 안전사고 또는 재해의 해당 부서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7조(재해분석 및 대책)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한 재해 현황에 대하여 재해원인과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무재해운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추진한다.

제39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 관련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코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목적, 정의, 적용대상 등을 정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 보건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 안전사고 근절 및 문서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석봉동 307-28	석봉북로15번길 25	2019. 4. 26	건물신축	석봉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일시점용 (㎡)	영구점용 (㎡)	공사기간
합계		상수도관 매설	5개소			3,363.0	17,195.0	428.25	'19.4. ~ '19.9. (착공일로 부터 150 일)
1	신탄진로 3 49-2	상수도관 매설	와동 260-1 일원	100	아스콘	400.0	1,400.0	40.0	
2	중리서로 2 3	상수도관 매설	중리동 442- 3 일원	100	아스콘	160.0	1,040.0	16.0	
				150	투수콘	445.0	1,558.0	66.75	
3	신탄진로 232번길 26	상수도관 매설	와동 59-2 일원	100	아스콘	546.0	3,549.0	54.6	
				200	아스콘	278.0	1,807.0	41.7	
4	대청호수로	상수도관 매설	이현동 373- 2 일원	150	아스콘	710.0	2,485.0	106.5	
5	중리로 21 번길 33	상수도관 매설	중리동 403- 1 일원	100	아스콘	418.0	2,717.0	41.8	
				150	아스콘	406.0	2,639.0	60.9	

별첨 : 사진대지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9년도 소하천(배오개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배오개천	소하천 (배오개천) 정비사업	이현동 223-3	이현동 219-1	-	121	-	'19. 5	착공일로 부터90일	재해예방	수용·사용할 토지 및 물건 조서 별첨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계재생략)
2. 위치도 (축척 50,000분의 1 지형도/붙임)

※ 열람장소 : 대덕구청 건설과 (tel : 042-608-5223)

※ 열람기간 : 2019. 4. 26. ~ 2019. 5. 17.(토·일 공휴일 제외)

소 하 천 정 비 시 행 계 획

○ 소하천 정비공사의 명칭 : 소하천(배오개천) 정비사업

○ 소하천 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소하천인 배오개천에 대하여 노후제방 등을 정비하여 재해위험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 요 : 사업의 면적 2,039.9m², 연장 121.0m
- 위 치 : 대덕구 이현동 222-1번지 일원

○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 소하천 정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 착공일 : 2019. 5.
-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90일(예정)

○ 실시설계도서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도시국 건설과에 비치

○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

- 사업비(재원 및 연도별)

구 분	재 원 별(천원)				비 고
	계	국 비	시 비	구 비	
2019년도	200,000		100,000	100,000	

사 용 또 는 수 용 할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소하천(배오개천) 정비사업

가. 토지 또는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및 내용	
1	이현	223-9	답	383.0	21.0	대덕구					
2	이현	223-3	답	1,294.1	74.0	김옥분	대전 대덕구 이현동 167				
3	이현	223-11	답	176.0	176.0	대덕구					
4	이현	223-4	답	1,250.9	18.0	이선영 외15인	대덕구 대청호수로1325번길 68				
5	이현	223-12	답	64.0	64.0	대덕구					
6	이현	223-2	답	1,549.0	22.0	이선영 외3인	대덕구 대청호수로1325번길 68				
7	이현	223-10	답	113.0	113.0	대덕구					
8	이현	226	답	1,117.0	119.0	동래정씨장막 공파종중	142				
9	이현	227-2	답	79.0	4.0	대덕구					
10	이현	222-8	답	193.9	10.0	대덕구					
11	이현	222-9	답	232.5	225.0	대덕구					
12	이현	222-1	답	957.5	83.0	김진환 외2인	이현리 347				
13	이현	221-6	답	2.7	2.7	대덕구					
14	이현	221-5	답	1.5	1.5	대덕구					
15	이현	221-1	답	825.0	44.0	김원기	대덕구 신탄진로810번길98				
16	이현	221-2	답	449.0	16.0	김원기	대덕구 신탄진로810번길98				
17	이현	221-7	답	2.7	2.7	대덕구					
18	이현	219-3	답	1.0	1.0	김우기	대덕구 이현동 324				
19	이현	220-1	답	290.7	152.0	대덕구					
20	이현	219-1	답	1,764.7	42.0	김태훈	대덕구 대청호수로1325번길50	익산원예농 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익산시 평 동로 649	근저당	
								이향연	전라북도 익산시 인 북로18길 29(마동)	근저당	
21	이현	707-30	구	2,505.7	849.0	건설교통부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조서

권리 구분	소재지						토지소유자		비고
	구	동	지번	지장물명	구조 및 규격	수량	주소	성명	
1	대덕	이현	222-9	대추나무	2m	15주		대덕구	
				"이 하 여 백"					

□ 위치 도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3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I.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1. 공시기준일 : 2019년 1월 1일
2. 대 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옛신탄진로 235(오정동 9-20번지)
외 10,891호
3. 공 시 사 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4. 열 략 장 소 : 대덕구청 세무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http://daejeon.go.kr/tax/index.do>)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II.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 청 기 간 : 2019. 4. 30. ~ 5. 30.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 청 방 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대덕구청 세무과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제출
4. 결 과 통 지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대덕구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580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19. 1. 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 3인이 표준주택을 감정 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대덕구청 세무과 및 대전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http://daejeon.go.kr/tax/index.do>),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kras.go.kr>)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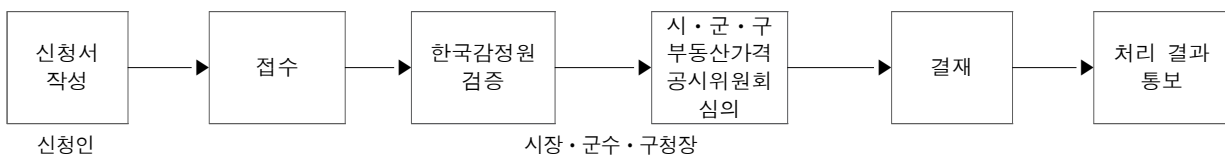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공공체육시설 수탁기관 모집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촌생활체육공원 및 을미기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을 민간위탁·운영하기 위한 수탁관리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민간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체육시설	사용료
송촌생활체육공원	선비마을로 200 (법동)	배드민턴장 3면	무료
		족구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농구장 1면	
		풋살경기장 1면	
선비마을로 110 (송촌동)	실외테니스장 5면	1면 1시간 ₩2,000원 (조명사용시 ₩3,000원 추가)	
을미기근린공원	대덕대로1448번길120(신일동)	실외테니스장 4면	

※시설사용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참고

2. 위탁사무 : 공원 내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3. 위탁기간 : 2019. 6. 19. ~ 2022. 6. 18.(3년간)

※ 운영실적 및 체육발전 기여도 등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4. 응모자격 :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수탁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체육 관련 단체

※ 주된 사무소란 법인(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증명서상 본사 소재지를 말함

5. 위탁조건

- 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독립채산제로 운영
- 손실부담 : 수탁자 부담 원칙 (수탁료 또는 위탁 지원금 없음)
- 위탁보증금 등
 - 위탁시설의 정상운동을 위하여 보증보험(₩50,000,000원)에 가입
 - 건물 및 시설물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 비용부담
 -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 재산가치 또는 사용연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시설의 개선이나 미비 시설의 보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덕구청장이 부담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
- 대덕구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체육교실은 공공성을 위하여 무상사용
- 기타 사항은 위탁관리·운영협약 체결시 약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민간위탁현장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5. 2(목) 14:00
 - 장 소 : 송촌 생활체육공원 및 을미기 근린공원
 - 송촌생활체육공원(14:00) → 이동 → 을미기근린공원(15:00 예정)
 - 참 석 : 시설 관리·운영 수탁신청(예정)단체
- ※ 사업설명회 불참에 대한 심사상의 반영사항은 없으나 현장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착오 등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 5. 13(월) ~ 5. 15(수) / 18:00까지

○ 접수장소 : 문화체육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1인 이하 접수시 ⇒ 2차 모집공고 및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문화체육과 비치, 붙임2)
- 사업계획 제안서 및 보조자료 15부(區 권장서식, 붙임3)
- 신청인(법인, 단체) 현황 1부(붙임4)
- 서약서 1부(붙임5)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단체등록증) 각 1부

8. 사업계획 제안설명 및 수탁자 선정 발표

○ 일 시 : 2019. 5. 21(화) 10:00 (예정)

○ 장 소 : 대덕구청 2층 중회의실

○ 참 석

-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 기록관리 공무원
- 제안 설명자(신청인), 보조설명자 등 2인

○ 진행방법

- 신청자(또는 대리인)의 제안 설명(20분 이내)
- 심사위원 질의, 신청인(보조설명자) 답변
- 심사위원 평가표 작성 및 적격업체 선정

○ 선정방법 : 『대전광역시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 평가항목

- 정량적평가(총30점) : 수행능력, 재정능력, 기술력, 신인도
- 정성적평가(총70점) : 사업계획, 조직관리, 프로그램 운영, 고객관리,

지역사회공헌도 등

- 정량적 평가(제안서 서류심사 30점)와 정성적 평가(심사위 평가 70점)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선정한다.

- 최고득점가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 선정발표 : 사업계획 설명회 후 당일 집계 발표

9. 기타사항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인은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제출안을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설명하여야 함.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자료는 비공개로 함
- 수탁자로 결정 통지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 608-6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

- 【붙임 1】 수탁기관 선정 적격심사표
- 【붙임 2】 체육시설 민간위탁 신청서
- 【붙임 3】 체육시설 민간위탁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 【붙임 4】 신청인(법인, 단체) 현황 서식
- 【붙임 5】 서약서
- 【붙임 6】 위임장(대리인 지정시) 끝.

수탁기관 선정 적격심사표

구 분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평 가																	
계		100																		
정량적 평가 (30점)	<p>1. 수행경력</p> <p>○ 해당분야 체육시설(유료화 시설) 운영 경력 평가</p> <p>- 동일 종목의 입증 가능한 경력 중 가장 유리한 1건만 인정</p> <p>- 배점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5%;">5년이상</th> <th style="width: 15%;">3년이상</th> <th style="width: 15%;">2년이상</th> <th style="width: 15%;">1년이상</th> <th style="width: 15%;">1년미만</th> </tr> </thead> <tbody> <tr> <td>풋살경기장</td> <td>8</td> <td>6</td> <td>4</td> <td>2</td>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middle;">0</td> </tr> <tr> <td>테니스장</td> <td>8</td> <td>6</td> <td>4</td> <td>2</td> </tr> </tbody> </table>	구 분	5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풋살경기장	8	6	4	2	0	테니스장	8	6	4	2	16	실 무 부 서
구 분	5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풋살경기장	8	6	4	2	0															
테니스장	8	6	4	2																
	<p>2. 재정능력(2018년 기준)</p> <p>○ 법인은 재무재표상의 부채비율과 자본금 평가</p> <p>- 세무서 신고자료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대차대조표)에 의해 평가</p> <p>- 안정성 지표(부채율) : 부채/자기자본×100</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15%;">100%미만</th> <th style="width: 15%;">120%미만</th> <th style="width: 15%;">160%미만</th> <th style="width: 15%;">200%미만</th> <th style="width: 15%;">200%이상</th> </tr> </thead> <tbody> <tr> <td>2.0점</td> <td>1.7점</td> <td>1.4점</td> <td>1.1점</td> <td>0.8점</td> </tr> </tbody> </table> <p>- 유동성 지표(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p>	100%미만	120%미만	160%미만	200%미만	200%이상	2.0점	1.7점	1.4점	1.1점	0.8점	6								
100%미만	120%미만	160%미만	200%미만	200%이상																
2.0점	1.7점	1.4점	1.1점	0.8점																

구 분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평 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20%이상</td> <td>80%이상</td> <td>40%이상</td> <td>10%이상</td> <td>10%미만</td> </tr> <tr> <td>2.0점</td> <td>1.7점</td> <td>1.4점</td> <td>1.1점</td> <td>0.8점</td> </tr> </table> <p>- 자금 확보 능력 : 자본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10억원이상</td> <td>8억원이상</td> <td>5억원이상</td> <td>3억원이상</td> <td>3억원미만</td> </tr> <tr> <td>2.0점</td> <td>1.7점</td> <td>1.4점</td> <td>1.1점</td> <td>0.8점</td> </tr> </table> <p>○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단체 또는 개인은 결산서, 신용정보조회표(금융기관), 잔고증명 등에 근거하여 자금 확보 능력만 평가</p> <p>- 자금 확보 능력 : 예·적금 잔고(공고일 전일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억5천만원 이상</td> <td>2억원 이상</td> <td>1억5천만원 이상</td> <td>1억원 이상</td> <td>1억원 미만</td> </tr> <tr> <td>6.0점</td> <td>5.1점</td> <td>4.2점</td> <td>3.3점</td> <td>2.4점</td> </tr> </table>					120%이상	80%이상	40%이상	10%이상	10%미만	2.0점	1.7점	1.4점	1.1점	0.8점	10억원이상	8억원이상	5억원이상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0점	1.7점	1.4점	1.1점	0.8점	2억5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6.0점	5.1점	4.2점	3.3점	2.4점		
120%이상	80%이상	40%이상	10%이상	10%미만																																	
2.0점	1.7점	1.4점	1.1점	0.8점																																	
10억원이상	8억원이상	5억원이상	3억원이상	3억원미만																																	
2.0점	1.7점	1.4점	1.1점	0.8점																																	
2억5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6.0점	5.1점	4.2점	3.3점	2.4점																																	
	<p>3. 기술력(공고일 현재)</p> <p>○ 운영책임자 또는 보유 인력(2018.1.1부터 계속 근무)의 해당 종목 자격증 보유 평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구 분</th> <th>테니스 지도자 관련</th> <th>풋살 지도자 관련</th> <th>없음</th> </tr> <tr> <td>보유인력</td> <td>2</td> <td>2</td> <td>0</td> </tr> </table>					구 분	테니스 지도자 관련	풋살 지도자 관련	없음	보유인력	2	2	0	4																							
구 분	테니스 지도자 관련	풋살 지도자 관련	없음																																		
보유인력	2	2	0																																		
	<p>4. 신인도(2016.1.1.이후)</p> <p>○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경력, 지방세 체납 경력, 각종 수상실적 평가</p>					4																															

구 분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평 가	
정성적 평가 (70점)	행정처분등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배 점	2.0점	1.5점	1.0점	0.5점			
	○ 수상실적은 기초자치단체 이상의 행정기관에서 수여한 수상실적만을 대상으로 평가(상장 제외)							
	수 상 실 적	3회 이상	2회	1회	없음			
	배 점	2.0점	1.7점	1.4점	1.0점			
	1. 사업계획 총괄							
	○ 운영목표 및 프로그램의 공공성							15
	○ 전체 사업계획의 전문성, 체계성, 실현가능성							10
	2. 조직관리							7
	○ 관리 및 운영인력 구성의 적절성							5
○ 인력수급계획 및 지역일자리 창출 기여도					2			
3. 프로그램 운영					10			
○ 프로그램 구성의 체계성 및 다양성					7			
○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용화 방안					3			
4. 고객관리					15			
○ 회원의 확보 및 관리 시스템					10			
○ 민원 대처 및 환류시스템					5			
5. 시설관리					8			
○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구 분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평 가
	○ 시설 개선 및 투자 계획	5 3	
	6. 재무관리 ○ 자금(재정) 확보 및 운영계획 ○ 회계관리시스템 및 투명성 확보 방안	5 3 2	
	7. 지역사회 기여도 ○ 지역사회 기여 실적 ○ 지역 체육진흥 기여 계획	10 7 3	

체육시설 민간위탁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 작성요령 / 권장서식 >

□ 규격

- A4 규격 용지 사용
- 표지를 제외하고 페이지 번호 부여 (페이지가 표시된 목차 삽입)

□ 내용

- 총괄
 - 사업의 목적 및 목표(경영방침), 사업전개 방향 및 주요 사업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계획, 전문인력 확보 현황 및 수급 계획
 - 운영계획
 - 운영계획, 예상수지분석, 고객관리 및 민원처리 계획
 - 시설 유지관리계획
 - 시설, 장비, 물품 관리·운영 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 보완 계획
 - 이용자 편의 확보 및 안전관리 계획
 - 재무관리 계획
 - 자금소요액 분석 및 자금 운영 계획,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방안, 재원 조달 계획
- ※ 사업제안서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기타

- 서류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 보완 요청에 따라 접수일 익일까지 보완해야 하며 미보완시 당초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하거나 평가에서 제외(0점 처리)
-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후 확인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구의 해석에 의함
-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구의 소유로 귀속됨

체육시설 운영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 가. 사업의 목적, 목표, 필요성
- 나. 사업계획 전개 방향
- 다. 주요 사업내용
- 라. 시설운영 활성화 방안

2. 조직 및 운영인력 구성 계획

- 가. 운영인력
- 나. 운영인력 확보현황 및 수급계획

3. 운영계획

- 가. 운영프로그램 및 고객관리 계획
- 나. 마케팅전략 및 서비스 향상 대책
- 다. 시설별 예상수지 분석내역(예시 참조)

4. 유지관리계획

- 가. 시설·장비 확보 및 물품구입·비치 계획
- 나.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 다. 이용자 편의 확보 및 안전관리 계획

5. 재정능력

- 가. 자산현황(법인현황 서식 참고)
- 나. 연차별 자금소요액 분석 및 재원조달 계획
- 다. 위탁보증금 제시액 및 예치 계획
- 라.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방안

6. 주요사업 추진일정

- 기본항목으로 참고하고 필요시 변경하여 사용

신청인(법인, 단체) 현황

1. 명 칭(성명) :
2. 소재지(주소) :
3. 설립(신청)목적 :
4. 대표자 및 임원현황

직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요경력	비고 (연락처)

5. 설립일자 및 연혁(경력)

년월일	연혁

6. 주요 사업분야 및 실적

※ 필요한 경우 실적증명 첨부

7. 재산현황 / 증빙자료 첨부

※ 동산, 부동산, 부채, 기타 자산 등 (증빙자료 첨부)

8. 관련시설(체육시설) 운영실적

시설명	소재지	운영기간	운영실적
			시설규모, 이용인원, 경영수지

9.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

사업명	활동내용	비고
	- 일시, 장소, 대상, 내용, 실적 등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사업효과 및 수혜자 등 기재

※ 모든 항목에 대한 입증자료 사본은 원본대조하여 첨부

서 약 서

신청인 :

주 소 :

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인 또는 단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법인 또는 단체명		연락처	

대덕구 송촌체육공원 및 을미기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수탁기관 선정 공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9.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270호, 2017.12.19.공포, 2019.7.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포함된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변경된 제도 시행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장애 등급 용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별표 2).

⇒ “1급~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 개정

⇒ “4급~6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 개정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의 장애등급 용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별표 3).

⇒ “1급~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 개정

⇒ “4급~6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 개정

4.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19. 00. 00. ~ 2019. 00. 00.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5. 16.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교육공동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공동체과

(전화 : 042-608-6513, FAX : 042-608-3822, E-mail : songs041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공동체과 담당자 송수연 (전화 : 042-608-65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1~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4급~
6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
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1~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4급~6
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공동체과	
담 당 자 연 락 처	송 수 연 042-608-6513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2019.0.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2019년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 대처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2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 관내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히 대응코자함

4. 설치장소 : 방범용(12개소 / 12대) 【첨부1】

5.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설치 구역 반경 50m, 24시간 연속 촬영

6. 예고기간 : 2019. 4. 25 ~ 2019. 5. 15(20일간)

7. 공고방법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

8.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 5. 15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제출서식 : 【첨부2】 참조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 대덕구청 회계정보과(☎ 042-608-6097 fax 042-608-3939)

